

Ⅱ. 퇴직연금 가입실태

1. 가입 퇴직연금 유형 및 금융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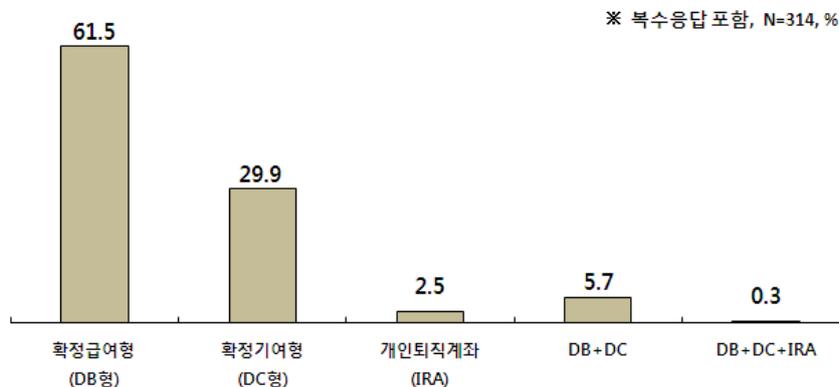
가. 가입유형

□ 설문조사 결과, 기업들은 대체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A)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위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61.5%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29.9%, 개인퇴직계좌(IRA)에 2.5%의 기업이 가입함으로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남.

반면에 “확정급여형+확정기여형” 형태의 퇴직연금에는 5.7%, “확정급여형+확정기여형+기업형 개인퇴직계좌” 형태의 퇴직연금에는 0.3%만이 가입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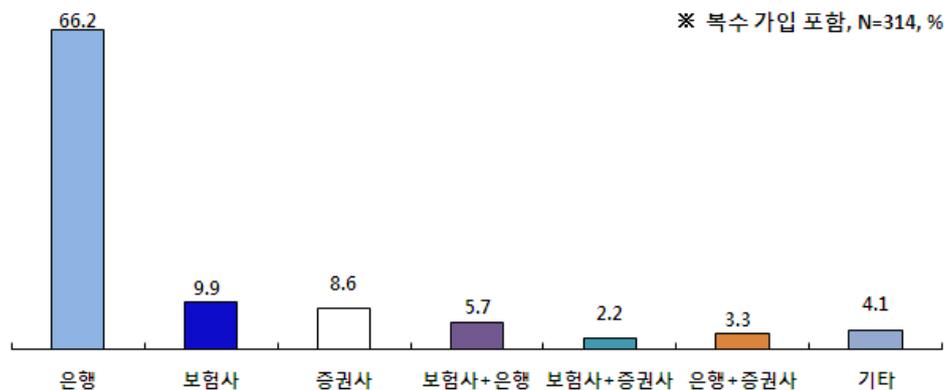
<그림 1>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



나. 가입 금융회사

- 퇴직보험을 해지한 후 대부분의 기업은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,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재가입한 기업은 10% 수준에 불과하고 있음.
- 전체기업(N=314)중 66.2%인 208개 기업이 은행에 가입한 반면,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재가입한 기업은 9.8%인 31개 기업임.
- 특히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기업보다 단일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업이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.
- 단일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한 기업은 전체기업의 84.7%인 266개 기업인 반면, 보험+은행 등과 같이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한 기업은 15.3%인 48개 기업에 그치고 있음.

<그림 2>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



- 보험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의 64.5%, 은행에 퇴직연금

을 가입한 기업 63.9%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사 및 은행은 상대적으로 증권사에 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비율이 높음.

- 다만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표1>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상품 가입 유형

(단위: %)

구 분	확정급여형 (DB형)	확정기여형 (DC형)	개인퇴직계좌 (IRA)	DB+DC
보험(N=31)	64.5	32.3	3.2	-
은행(N=208)	63.9	31.3	2.9	1.9
증권(N=27)	40.7	55.6	3.7	-

주: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업 제외

2. 금융회사의 가입권유 실태

사업자 변경 경험기업

- 응답기업 중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.9%에 불과한 반면, 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0.1%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사업자를 변경한 경험이 있음.

<표2> 기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경험 유무

응답 기업	변경한 경험이 있는 기업	변경한 경험이 없는 기업
314개 기업	283개 기업	31개 기업
100%	90.1%	9.9%

□ 또한 종전의 퇴직보험에서 현재의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기업 비중은 78.4%, 종전의 퇴직연금에서 현재의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기업비중은 21.6%로 낮은 수준임.

○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*(보험+증권, 보험+증권, 은행+증권, 보험+은행+증권)에 가입한 기업을 제외한 238개 기업의 약 78.6%인 187개 기업은 은행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여 가입함.

* 복수사업자 변경기업의 경우 사업자의 영향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.

<표3> 사업자 변경 형태 및 변경후 가입 금융회사

구 분		기업(사례)수	종전 퇴직보험→ 현재 퇴직연금	종전 퇴직연금→ 현재 퇴직연금
전체 변경기업		283	78.4%	21.6%
단일 금융 기관	보험	27	81.5%	18.5%
	은행	187	72.7%	27.3%
	증권	24	87.5%	12.5%
	소계	238	75.2%	24.8%
복수 금융 기관	보험+은행	17	100.0%	0.0%
	보험+증권	7	100.0%	0.0%
	은행+증권	10	90.0%	10.0%
	보험+은행+증권	11	90.9%	9.1%
	소계	45	95.6%	4.4%

주: 사례수 30건 이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부족

- 이에 반해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보험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재선정한 경우는 약 11.3%인 24개 기업에 불과하여 대체로 해지된 퇴직보험 대부분은 은행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□ 퇴직연금 가입권유

- 사업자 변경 경험이 있는 238개 기업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분석하여 가입한 기업비중은 47.9%, 금융회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한 기업 비중은 52.1%인 것으로 나타남.

<표4> 퇴직연금 가입권유 형태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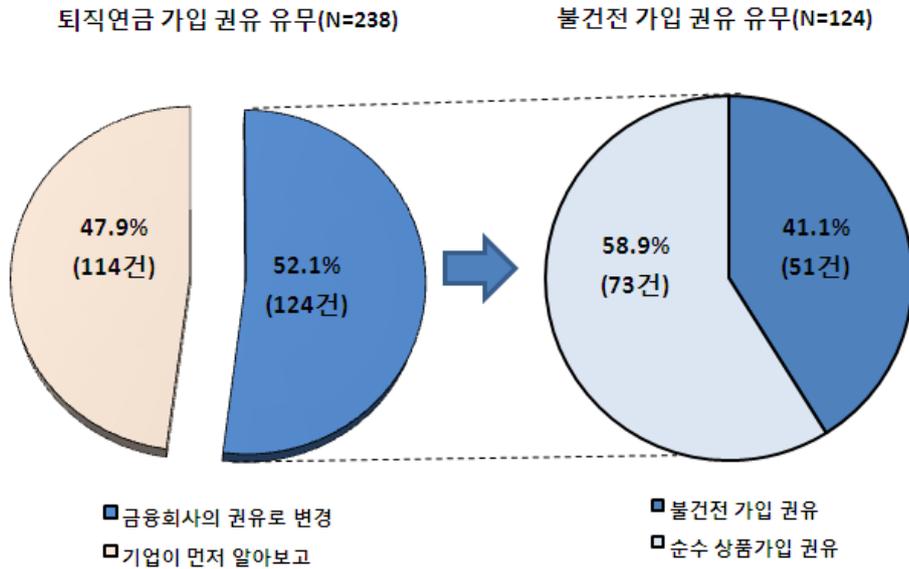
구분	사업자 변경기업(N=238)		금융기관 권유가입 기업(N=124)	
	기업이 먼저 알아보고 변경	금융회사 권유에 변경	순수 가입권유	불건전 가입권유
기업수	114	124	73	51
비중	47.9%	52.1%	58.9%	41.1%

주 : 순수가입권유는 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게 적절한 상품을 권유하여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

따라서 금융회사의 권유에 의해 퇴직연금 가입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.

- 특히 금융회사 권유 중에 불건전 가입권유(조건부 가입권유)가 차지하는 비중이 41.1%인 51개 기업에 이르고 있어 불건전 가입권유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3> 순수 가입권유와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



* 불건전 가입권유(조건부 가입권유) 행위

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,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을 유지하는 조건, 신규대출을 허용하는 조건,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,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

□ 금융회사별 불건전 가입권유 실태

- 사업자 변경기업(N=238건)에서 차지하는 은행, 보험사, 증권사의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은 각각 19.3%, 1.3%, 0.8%인 것으로 은행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가 상대적으로 심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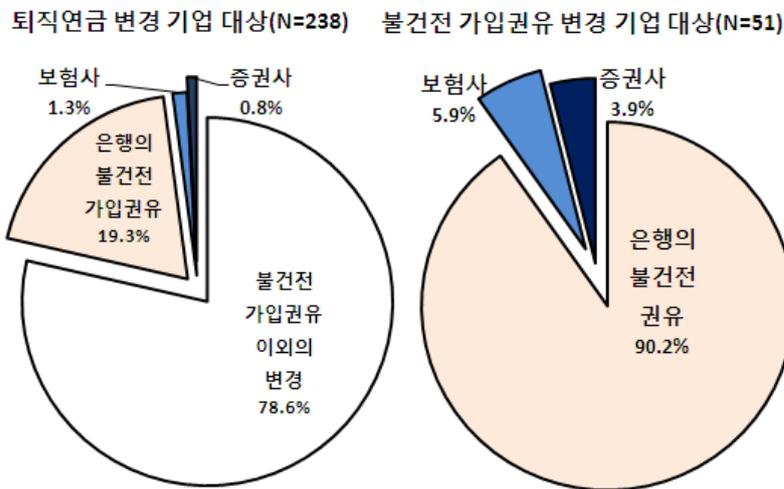
금융회사전체의 불건전 가입권유(N=51)중에서 은행의 불건전 가입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0.2%에 이르고 있어 압도적임.

<표5> 금융회사별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(사업자 변경기업 기준)

퇴직연금 사업자 변경기업 ^{1,2} (A)	불건전 가입권유로 가입한 기업수(B)			
	은행	보험사	증권사	계
238	46 (90.2%)	3 (5.9%)	2 (3.9%)	51 (100.0%)

주: 1) 보험+ 은행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기업 제외
 2) 보험사 및 증권사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부족(표본수 30개 이하)

<그림4> 금융회사별 불건전 가입권유 비중



○ 즉 불건전 가입권유는 주로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보험사 및 증권사의 불건전 가입권유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임.

3.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실태

□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들은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서비스(근 퇴법상의 사후관리서비스)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퇴직연금 가입한 이후의 사후관리서비스 중 응답기업의 절반이

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약사항안내(67.5%), 적립금의 운용현황을 비롯한 기록·보관·통지(58.6%), 가입자 교육(54.8%), 종업원 설명회(51%) 등임

응답기업의 40%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: 제도설계 컨설팅(45.5%),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(42.7%), 투자성향 분석 및 운용지시(41.1%), 취급실적 안내(40.1%)

응답기업의 20%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: 수탁회사 보고서(23.9%),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(27.7%), 적립비율 변경안내(31.2%), 자산운용 보고서(25.5%)

○ 반면에 연금계리서비스(8.3%), 재정건전성 검증(12.4%)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제공받고 있음.

<표6> 가입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실태 (N=314)

서비스 항목	계약 사항 안내	운용현황 기록/보관통지	가입자 교육	종업원 설명회	제도 설계	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	투자성향 분석 운용지시	취급실적 안내
%	67.5	58.6	54.8	51.0	45.5	42.7	41.1	40.1
서비스 항목	적립비율 변경안내	운용방법 제시	자산운용 보고서	수탁회사 보고서	재계산	재정건전성 검증	연금계리 서비스	기타
%	31.2	27.7	25.5	23.9	20.4	12.4	8.3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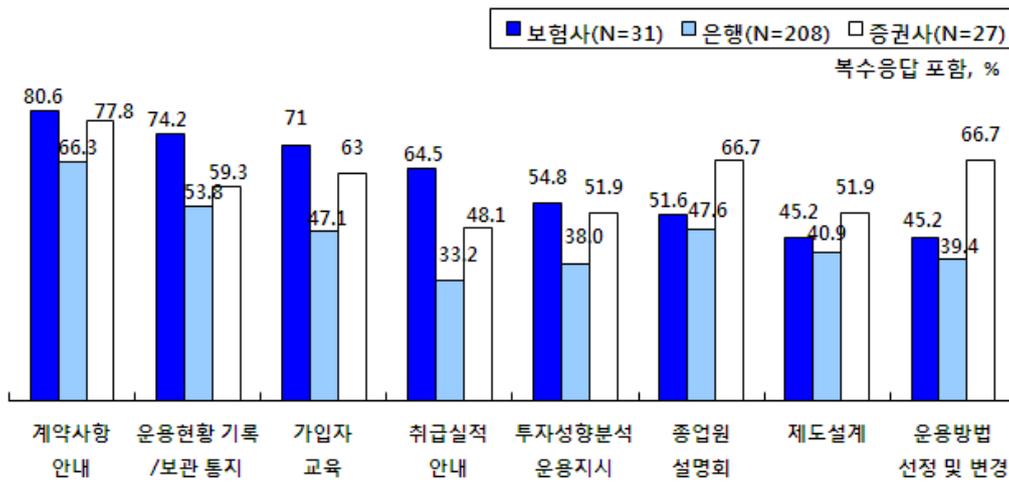
주: 복수응답 포함

□ 금융회사별로 보면 보험사는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 계약사항 안내(80.6%) 등 11건의 서비스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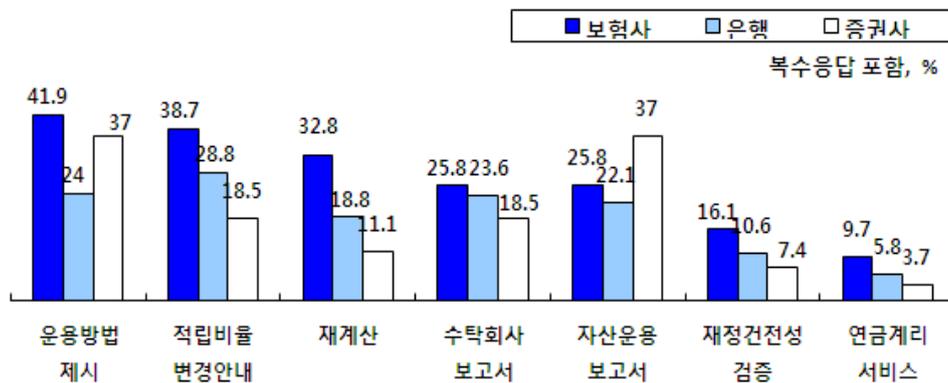
○ 증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(66.7%) 등 4건의 서비스에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음.

- 은행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1건도 존재하지 않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.

<그림 5> 금융회사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(Ⅰ)



<그림 6> 금융회사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 (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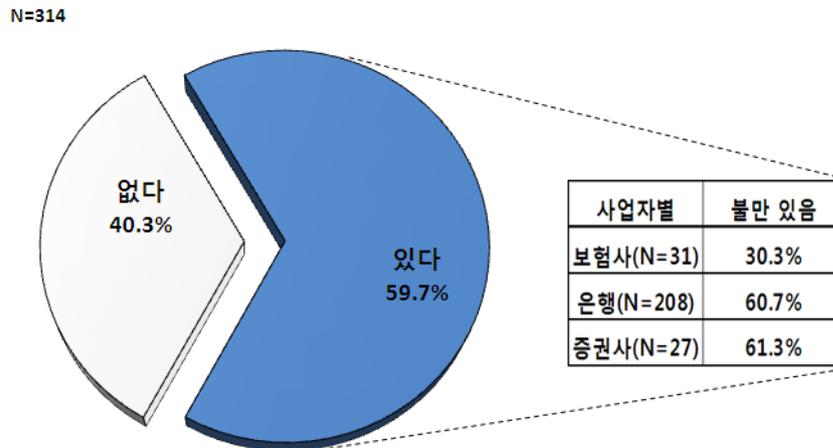


- 금융회사의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보험사가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다양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4. 불만사항 및 사업자 변경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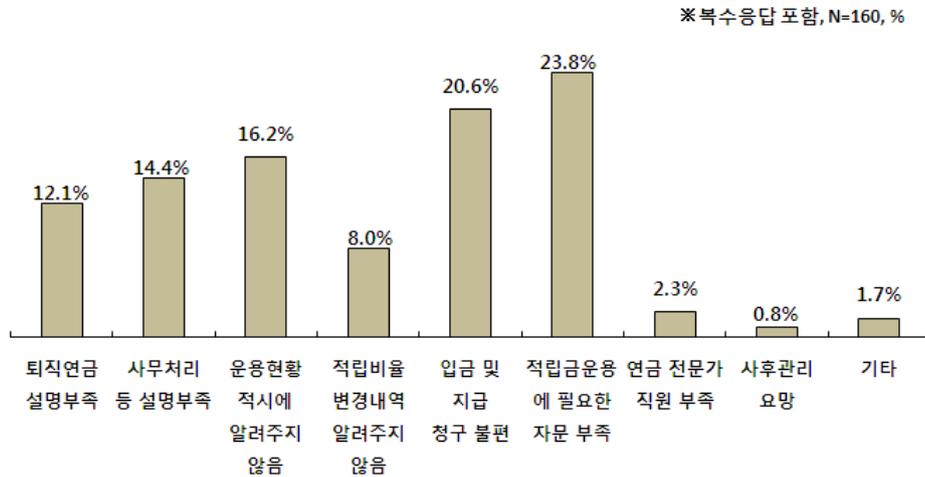
-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느꼈던 불만사항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
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후관리서비스 부실 등으로 응답기
업의 약 59.6%가 불만사항이 존재함.
- 은행에 가입한 기업은 60.7%,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.3%가
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,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.3%
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함.

<그림 7>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불만정도



- 특히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적립금운용에 필요
한 자문 부족(23.3%), 입금 및 지급청구 불편(20.1%), 운용현황
정보제공 부족(15.9%) 등을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나타남.
- 은행은 퇴직연금 설명 부족(14.1%), 연금전문가 직원 부족(2.5%)
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불만정도가 높음

<그림8> 향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불만사항



- 보험사는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자문 부족(39.9%), 운영현황을 적시에 알려주지 않음(30%), 적립비율 변경내역을 알려주지 않음(20.1%) 등에서 불만정도가 높음.
- 증권사는 입금 및 지급 청구불편(26.3%), 사무처리 방법 등 설명 부족(15.8%) 등에서 불만정도가 높음.
- 또한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88.9%가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.
- 변경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은행(3.2%) 및 증권사(2.5%)보다 보험사(4.5%)로 변경할 의향이 크다고 응답함.

<그림 9>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의향

N=314

